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술연구비 지급규정

제1조 (목적)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기초와 임상 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회원의 의욕을 고취하며, 이 분야의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술연구비라 한다.

제3조 (연구비 지원규모)

총 연구비 지원은 1억1천만원 이내에서 정하며, 선정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연구과제 중 1과제에 대해서는 5천만원, 2과제에 대해서는 3천만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자격)

-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하 본 회라 칭함)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 2) 학술연구비 신청 시 필요 자격으로 3년 이내 본 학회 학회지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에 원저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2015년 학술연구비 신청부터 적용한다)
- 3) 학술연구비로 선정된 연구자는 해당 연구가 종료되어 본 학회 학회지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에 게재된 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제5조 (연구비지급 신청서류)

신청서류로써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서 1부(소정양식)
- 2) 추천서(소정양식) 1부(추천자의 자격 : 학회원)
- 3) 사진(명함판) 1매
- 4) 이력서(소정양식) 1부
- 5) 요약문(소정양식) 1부
- 6) 연구계획서 1부
- 7) 연구실적(최근 3년간 연구실적)
- 8) 기타증빙서류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

1. 심사위원회 구성

연구비 수혜자는 학술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여 추천한 2배수 후보 대상자 중 임시소위원회 (이사장이 심사위원장이 되고 위원 5명을 선임한다.)에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1회를 심사한다.

2. 심사 절차

- 1) 본 절차는 심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되, 심사위원 2/3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2)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7조 (연구비 지급방법 및 편성기준)

- 1) 연구비는 학술연구비로 선정된 후 총 금액을 일괄 지급한다.
- 2) 연구비는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기술정보비, 재료비(연구 기자재비, 시약 및 재료비, 전산처리비), 수송비 및 수수료 등으로 구분하며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기술정보비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연구계획의 변경 및 승인)

- 1) 연구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연구책임자는 해당 양식에 맞게 연구과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연구계획 변경에는 연구과제의 중단, 연구목표(내용)의 중대한 변경, 책임연구기관 변경, 연구기간의 연장 등을 포함한다.
- 3)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행 중에 해외여행, 사고, 질병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연구를 3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연구중단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연구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 4) 연구계획을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 연구과제 변경 또는 중단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목표(내용)의 변경 시 변경된 계획서, 비교표 등을, 연구중단 시 연구비 집행내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 1)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연구기간 종료 연도의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하고, 연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trd에 게재하여야 한다.
- 2) 연구 결과와 관련된 논문을 연구비 규모가 5천만원인 연구는 2편 이상, 3천만원인 연구는 1편 이상 trd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단, 연구 내용의 특성상 여러 편의 논문 산출이 힘든 경우는 당해 연구비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1편을 보고할 수 있다.
- 3) 연구결과의 발표물에는 반드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영문: supported by grant No.() from the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4)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학술연구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없다.
- 5) 연구비 환수
 - 연구비 신청자격을 위반한 경우
 - 연구결과의 구두발표나 논문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동일한 연구결과를 trd와 타 학술지에 이중 게재한 경우
 - 연구비를 연구와 무관하게 부당 집행한 경우
 - 승인되지 않은 연구과제의 중단 및 중대한 연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기타 1년 이상 연구를 중단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비 환수조항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연구비 임시 심사위원회에서 연구비 반환 여부 및 환수 액수를 결정한다.

제10조 (연구비 수여 및 연구기간)

연구비는 추계학술대회 때에 수여하고, 연구 기산점은 연구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연구기간은 연구비 규모가 5천만원인 과제는 2년, 3천만원인 과제는 1년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연구 중간보고 후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연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기타 본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유효하다.
- 2) 본 규정은 2008년 7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3) 본 규정은 2012년 6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4) 본 규정은 2013년 5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5) 본 규정은 2016년 5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6) 본 규정은 2017년 9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7) 본 규정은 2024년 7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